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177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시는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 및 시설관리, 공연예술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

나. 2020회계연도 4차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1) 사무명 : 세종문화회관 출연금

2)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

3) 사무내용

- 세종문화회관의 운영
-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
-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, 보급 및 조사·연구
-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
-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

나. 추경개요

1) 추경예산 : 620,960천원

※ 총 출연금액 36,443,507천원 (기정 출연금액 35,822,545천원)

2) 출연금 편성 내용

- 임대료 감면에 따른 수입감소분 보전 : 490,424천원
- 삼청각 운영비 지원 : 130,538천원

2) 추경필요성

- 코로나19 관련 임대료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분 보전
 -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관공연 취소로 인한 대관료 환불, 자체 공연의 취소 또는 무관중 온라인 공연 진행, 객석 띄어앉기 등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, 코로나19 방역대책 시행으로 인한 지출 증가 등 재단 재정상황 악화
 -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정책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세종문화회관 임차인(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포함) 지원을 위해 6개월 간 임차료의 50% 감면 조치하였기에 이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지원 필요

- 삼청각 소속 근로자 인건비 지원

- 서울시의 한식문화 체험공간 조성계획에 따라 현재 삼청각 리모델링 공사 중
- 당초 삼청각은 '수익창출형' 위탁사업으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, 재료비 등 지출을 충당하여 왔으나,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로 이익잉여금은 전액 소진하였으며,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영업 중단으로 수입이 없어짐
- 코로나19로 인하여 재단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삼청각 소속 근로자 인건비(총 21명 중 19명 휴업수당 지급, 평균임금 70%) 지급 여력이 부족하기에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필요함

다.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기관 개요

1) 소재지 :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

2) 규 모 : 대지 55,758㎡, 건물 63,396㎡ (지하 3층, 지상 6층)

- 공연장(세종대극장, M씨어터, 체임버홀, S씨어터), 전시관(세종미술관, 세종충무공이야기), 교육시설(세종예술아카데미) 등

3) 전경 및 위치도

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의 결을 얻어야 한다.

2)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4조(사용료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(月割) 또는 일할(日割)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,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.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)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(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)을 적용할 수 있다.

제16조(사용료의 조정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·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(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)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

3)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

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, ..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산관리인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나. 관련 방침 :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계획(시장방침 제41호, 2020.03.03.)

- 1) 사유재산 6개월 간 임대료 50% 감면 및 공용관리비 감면
- 2) 손실분 및 환급분 보전 추가경정예산 편성

다. 서울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추진 경과

- 1) 공공 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시장방침 수립 : '20.3.3
- 2) 서울시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 : '20.3.26
- 3)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: '20.3.31
- 4) 코로나19 피해 관련 2020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 : '20.4.28
 - 「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기준」 으로 일괄 상정, “적정”으로 심의 통과
 - 재산관리부서가 지원기준에 따라 자체 임대료 감면 확정 및 승인
- 5) 코로나19 피해 관련 2020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 : '20.7.16
 - “조건부 적정”으로 심의 통과
 - 재산관리부서가 지원기준에 따라 자체 임대료 감면 확정 및 승인

다. 감면규모 : 세종문화회관 및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입점업체 9개소
 -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8개소, 중기업 1개소

〈임차료 감면 현황〉

(단위 : 원)

업체명	감면액	업체명	감면액
셀란(카페)	70,016,019	라포레스타(식당)	15,249,750
조유직(악기점)	6,277,040	베이커리카페	17,749,750
올리(기념품점)	4,279,505	전망대, 테라스카페	17,750,000
프로그랑스(꽃집)	2,309,066	편의점	23,925,000
광화문아띠(식음)	332,868,000		

라. 예산조치 : 2020년도 4차 추경예산 편성

마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문화정책과 문화협력팀 정민호 (☎ 2133-2527)